

제 호

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확인증

교육 이수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)		
이수 과정	과정명		이수일자	
차기 교육기간	년 1월 1일 ~ 년 12월 31일			

위의 사람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

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

직인



유 의 사 항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6조의3에 따라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2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